

2009. 4. 24

조례안 심사보고서

- ① 충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 ②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③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건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안 건 명	제 악 일자	회 부 일자	상 정 일자	의 결 일자	제안설명	비고
충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2009. 4.14.	2009. 4.15.	2009. 4.20.		건축디자인 과장	
충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 4.14.	2009. 4.15.	2009. 4.20.	2009. 4.20.	교통과장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 3.17.	2009. 3.17.	2009. 3.24, 4.20.	2009. 4.20.	황병주 의원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공공디자인 업무 추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충주시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 상품으로 발전시켜 ‘디자인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육성하고자 함

나.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주시 교통자문위원회와 충주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여 충주시 교통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다.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노인복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의 기본이념에 부응하고 노인의 사회적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보장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경노우대자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충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 (1)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2)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3)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공공디자인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4) 공공디자인을 공모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안 제7조)
- (5) 공공디자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부터 안 제18조까지)
- (6) 도시건축미관자문위원회 설치(안 제19조부터 안 제22조까지)

나.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 충주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기능에 충주시교통자문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안 제2조)
 - 교통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 교통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 택시면허 공급의 범위 및 부제 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 (2)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조례」 폐지

다.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 65세 이상 노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1일 1시간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함
(안 제3조 제4항 제8호 신설)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충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충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충주시 고유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름답고 품격있는 디자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임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정부에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하여 “디자인 코리아”를 국정 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디자인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며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등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충주시도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공공디자인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충주시의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충주시의 도시미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현재 충주시는

건축물, 도로 및 공원, 기타 가로 시설물 등의 설치 및 보수를 위하여 디자인·색채가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적인 관리를 위한 「충주시 경관조례」를 비롯하여,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 디자인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금번에 제정하려는 「충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그 입법 취지와 내용면에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면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조례안 별표 1에서는

현상설계 공모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디자인에 관한 심의(자문)를 받은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대형 도시구조물과 건축물의 경우 현상공모로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등 타 위원회에서 디자인을 심의하는 경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범위를 충주시로 한정되어 있어(안 제2조) 조례안 제정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앞으로 「충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와 「충주시 경관 조례」, 「충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등을 통합 (예,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하여 제정·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나.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충주시 교통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통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 하는 것은 예산의 절감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사항임

다.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1일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하자는 사항임

「노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강구를 의무화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약 501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시의 경우 2008년 12월 현재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전체 운전자의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 현황은 주차장 이용시 인적사항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니어 파악된 통계는 없으나 이용율이 그리 높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할인액 또한 1급지 경우 1,100원, 2급지의 경우 750원으로 크지 않아 주차장운영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는 보이나,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박물관, 고궁 등의 무료입장, 기차요금 할인 등과는 달리 일반적인 관점에서 경제력과 삶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65세 이상 승용차를 운전하는 노인에게만 교통비 성격의 혜택이 부여되는 측면도 있음

5. 질의답변 요지

가. 충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1) 질의 : 충주시 경관조례와 유사한 부분이 많을테?

답변 : 추후 경관조례를 개정할 예정임

(2) 질의 :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에만 해당되고 개인이나 기업체는 해당이 되지 않는지?

답변 : 공공기관만 해당됨

(3) 질의 : 조례를 좀 더 보완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답변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심의 등을 위해 일단 제정 후 추후 보완

나.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질의·답변 없음

다.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질의 : 노인의 기동성을 고려하여 무료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할 용의는?

답변 : 공용주차장 규모로 인하여 곤란함

(2) 질의 :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동등하게 할인 적용할 용의는?

답변 : 무분별한 이용을 초래 우려 있음

6. 심사결과

가. 충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 심사보류

〈사유 / 타 조례와의 관계 정립 및 내용이 유사한 조례 통합운영 검토〉

도시미관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충주시 공공 디자인 조례안」과 제정 취지에 있어

매우 유사한 「충주시 경관조례」를 비롯하여 조례안 내용면에서 중복되거나 관련이 있는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과의 명확한 관계 정립이 필요하며,

또한 공공디자인과 관련이 상당한 이들 조례를 통합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짐

**나.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다.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수정가결

〈사유 / 주차요금 감면대상자 간 형평성 적용〉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타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주차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

붙임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1부. 끝.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4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③(현행과 같음) ④----- ----- ----- ----- 1.~7.(현행과 같음) 8.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u>1일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의 100퍼센트</u> ⑤~⑥(현행과 같음)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③(현행과 같음) ④----- ----- ----- ----- 1.~7.(현행과 같음) 8. ----- <u>주차요금의 50퍼센트</u> ⑤~⑥(현행과 같음)